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Elderly Abuse and What to Do about It



조애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인학대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2007년도에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전체 조사대상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 2,325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실태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조사결과,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이는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보다 장기화, 잠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노인학대 피해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노인간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서비스 개발 및 고소·고발체계 확립,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등이 요구된다.

1. 서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

이들 노인인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취약집단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후기 고령층 노인의 증가²⁾는 신체적 질병,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 경제적 능력 저하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증가로 이어져 부

1) 통계청(2008), 2007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에 의하면,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 노인은 2008년 317,532명에서 2010년 372,568명으로, 2015년에는 533,312명, 그리고 2020년에는 770,00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양자의 부양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학대에 더욱 노출되게 된다.

이외 최근 노인부양의 주 담당자인 여성들의 취업률 상승과 자아실현 등을 위한 사회진출로 가족 내 부모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도 노인학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규모의 축소 및 핵가족화와 가족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결속력의 약화도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노인들을 가족의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노인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즉,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는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와 일부 사회단체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어 왔으나 노인학대는 1990년대에 들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³⁾.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노인학대 실태⁴⁾

1) 노인학대 발생률

(1) 노인특성별 노인학대 발생률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학대유형 별로는 정서적 폭력(5.2%), 방임(2.3%), 경제적 폭력(0.4%), 신체적 폭력(0.2%) 순으로 높았다.

노인의 성별로는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무배우자일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⁵⁾. 즉, 여성은

3) 박미은(2004), 도시거주 노인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6호, 한국노인복지학회, 겨울호, pp.309~336.

4) 본 고의 노인학대실태는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전체가구대상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 2,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본 고에서의 노인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로 정의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으로 함. 노인학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Straus의 CTS1(Conflict Tactics Scale, 1979; 1990)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에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 중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와 김미혜 외(2006)가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각 유형별 척도를 일부 활용하였음.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노인학대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정서적 폭력 6개, 신체적 폭력 7개, 경제적 폭력 4개, 방임 7개로 총 24개 행위로 측정하였음(각 학대유형별 구체적인 척도는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참조).

5) 김미혜(2001)와 이연호(2003)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은주·김태현(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여미옥(2002), 김한곤(2003), 배진희 외(2007) 등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없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학대받을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고 자녀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증가함으로써 가족의 원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 노인가구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 가구유형별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가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9.2%). 이는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노인의 경우 부양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대유형별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자녀동거가구가,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기타가구, 그리고 방임은 노인독신 가구가 가장 높았다.

(3) 노인의 경제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전체 노인에 있어서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고, 특히 99만원 이하의 경우 유형별 학대발생률도 타 월평균 소득수준의 노인보다 높았다. 주 소득원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노인의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고(9.1%), 그 외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받는 경우(7.9%)⁶⁾, 부동산 임대료, 연금, 저축 등(4.2%), 본인 및 배우자의 일·직업(3.6%)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주 소득원별로 각

표 1. 노인특성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전체	6.0	5.2	0.2	0.4	2.3	(2,214)
노인의 성						
남성	3.9	3.4	-	0.1	1.5	(852)
여성	7.3	6.4	0.4	0.5	2.8	(1,362)
노인의 연령						
65~69세	4.1	3.8	0.1	0.5	1.0	(916)
70~74세	6.7	6.4	0.4	-	2.5	(667)
75세 이상	8.1	6.2	0.2	0.5	4.1	(632)
노인의 교육수준						
무학	9.4	8.1	0.7	0.8	4.5	(602)
중학교 이하	5.8	5.3	0.1	0.3	1.8	(1,160)
고등학교 이상	1.8	1.3	-	-	0.9	(447)
노인의 혼인상태						
유배우	3.4	3.0	0.2	0.2	1.2	(1,258)
무배우	9.6	8.3	0.4	0.5	3.9	(956)

표 2. 노인가구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전체	6.0	5.2	0.2	0.4	2.3	(2,209)
노인독신가구	7.1	4.5	-	0.5	4.2	(621)
노인부부가구	3.0	2.5	0.1	0.2	1.4	(902)
자녀동거가구	9.2	9.7	0.5	0.3	2.1	(606)
기타가구	8.1	7.6	1.3	1.3	1.3	(80)

각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노인(7.5%), 자녀로부터의 보조(6.5%)를 받는 노인 순이었다. 방임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다(3.6%).

(4) 노인 건강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 건강이 매우 좋은 노인의 경우 학대 발생률이 2.7%이었으나 매우 나쁜 노인은 10.1%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건강

표 3. 월평균 소득 및 주 소득원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월평균 소득	99만원 이하	6.8	5.6	0.3	0.4	2.5	(1,919)
	100~199만원	2.3	2.3	-	-	0.4	(256)
	200~299만원	-	1.6	-	-	1.6	(64)
	300만원 이상	2.4	-	-	-	-	(42)
주 소득원	본인 및 배우자의 일·직업(근로소득)	3.6	2.9	0.1	0.4	1.2	(690)
	자녀로부터의 보조	7.9	6.5	0.2	0.1	2.6	(927)
	부동산 임대료, 연금, 저축·증권 이자 배당 등	4.2	3.8	-	0.5	2.1	(42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교통수당·경로수당 등	9.1	7.5	1.2	0.6	3.6	(253)

6)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학대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는 이성희·한은주(1998)의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8(3), pp.123~141과 서윤(2000)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 pp.27~71 등이 있음. 이외 일반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을 비교한 박미은(2004)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pp.93~119에서도 일반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학대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일반노인: 21.75%,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 41.30%).

표 4. 노인의 건강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전체	6.0	5.2	0.2	0.4	2.3	(2,211)
매우 좋음	2.7	3.5	-	-	0.9	(114)
좋은 편	3.8	3.4	0.3	0.9	1.4	(585)
보통	5.4	4.2	0.3	0.2	1.6	(639)
나쁜 편	8.2	7.3	0.1	0.3	3.5	(767)
매우 나쁨	10.1	8.5	-	-	4.7	(106)

표 5.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일상생활 수행 ¹⁾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²⁾	
	노인학대 경험률	(분석대상수)	노인학대 경험률	(분석대상수)
전체	6.4	(2,213)	6.4	(2,209)
전혀 어렵지 않음	4.9	(1,375)	3.4	(1,154)
약간 어려움	8.3	(447)	9.6	(554)
보통	8.1	(247)	10.4	(278)
매우 어려움	11.6	(138)	9.2	(206)
전혀 할 수 없음	16.7	(6)	9.5	(21)

주: 1)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등을 말함.
2) 일상생활용품이나 약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청소, 쓰레기 버리는 일,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을 말함.

이 나뉠수록 학대 발생률이 높았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노인 학대 발생률이 높아 일상생활 수행이 전혀 어렵지 않은 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은 4.9%이었으나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16.7%이었다.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여부에 따라서는 노인학대 경험률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경우 보다 약간 어려운 경우, 보통, 또는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체적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5) 사회지지적 관계망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Gelles(1987)는 고립된 가족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결핍되어 있으며, 이는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가정폭력의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즉, 적극적인 지지망의 존재는 노인학대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의 중재나 위기대처 역할을 촉진하기도 한다. Shugaman 등(2003)은 잠재적인 노인학대의 증후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⁸⁾.

이와 관련하여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나 이웃

모두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률은 4.7%로 낮은 편이었으며,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는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다(8.4%).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다른 유형의 폭력발생률 보다 높았으며, 특히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 가장 높았다(7.1%). 방임 발생률도 친구나 이웃이 모두 없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2.7%). 그러나 경제적 폭력의 경

우에는 친구나 이웃 모두 있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지지적 관계망 유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학대 발생률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본 가족유대감 수준별⁹⁾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가족유대

표 6. 노인의 사회지지적 관계망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친구·이웃 모두 없음	8.4	7.1	0.3	0.2	2.7	(887)
친구만 있음	6.3	4.3	-	0.3	2.6	(306)
이웃만 있음	3.2	2.9	0.2	-	0.5	(414)
친구·이웃 모두 있음	4.7	3.8	0.3	7.1	2.3	(710)

7) 선행연구에서도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보다 학대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Hickey & Douglas, 1981; Finkelhor & Pillemer, 1988; Pillemer & Suito, 1992; Lachs & Pliemer, 1995; Quinn & Tomita, 1997; 한동희, 1996; 이선희·한은주, 1988; 배진희 외, 2007 재인용). 권중돈(2004)의 경우에도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서 신체적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상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위험은 높아진다고 함.
8) 고보선(2005). 학대받는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제주 노인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

9) ①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 ②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 ③ 우리 가족은 불화가 생기면 그때 즉시 풀고 지나간다, ④ 우리 집 식구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 ⑥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 등이었으며, 각 질문 항목에 1점~5점까지의 점수(1점 전혀 그렇지 않

감이 낮은 그룹에서는 19.0%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간인 경우에는 4.8%,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1.1%만이 발생하였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은 가족유대감이 낮은 그룹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 유대감이 높은 그룹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았다. 즉,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됨으로서 노인학대 발생률은 낮아진다고 하겠다.

(7)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 제공여부 및 도움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의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경제적 도움, 집안청소, 세탁, 식사준비, 시장보기 등의 가사지원, 교통편의 제공, 정서적 도움, 간병·수발 및 기타 등의 도움 중 한 가지라도 도움을 준 여부와 도움을 받은 여부별 노인학대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도움을 준 경우보다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은 경우

(6.8%)에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5.3%)보다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다. 이로써 자녀나 손자·손녀 등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노인들의 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자원을 적게 가진 노인일수록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일지라도 자녀나 손자·손녀들이 기대하는 부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학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움을 받은 여부에 있어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도움을 받은 경우 학대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그만큼 의존적인 노인들의 경우 학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 3.7%로 가장 낮았다.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가사 등을 지원받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7.7%). 그 다음으로는 간병·수발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7.4%),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7.0%) 등의 순이었다.

표 7. 노인의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학대 발생률¹⁾

구분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유형별				(분석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낮음	19.0	15.2	0.3	1.2	7.4	(337)
중간	4.8	4.1	0.3	0.2	1.6	(1,417)
높음	1.1	1.0	0.2	0.2	0.6	(525)

주: 1) 6가지 항목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1~2점은 낮음, 3점은 중간, 4~5점은 높음으로 재구성함.

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를 부여하여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1~2점은 낮음, 3점은 중간, 4~5점은 높음으로 재구성하여 각 점수그룹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구한 것임.

표 8. 노인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¹⁾

(단위: %, 명)

구분	도움 준 여부			도움 받은 여부		
	도움을 준 경우	도움을 안 준 경우	전체	도움을 받은 경우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전체
노인학대 발생률 (분석대상수)	6.3 (1,125)	6.5 (1,085)	6.4 (2,210)	6.8 (1,717)	5.3 (493)	6.4 (2,210)

주: 1) 경제적 도움, 집안청소, 세탁, 식사준비, 시장보기 등의 가사지원, 교통편의 제공, 정서적 도움, 간병·수발 및 기타 등의 도움 중 한 가지라도 주거나 또는 받은 경우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것임.

표 9. 노인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도움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도움 준 경우		도움 받은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	(분석대상수)	노인학대 발생률	(분석대상수)
전체	6.4	(2,209)	6.4	(2,209)
도움 준(받은) 경험 없음	6.3	(1,134)	5.3	(493)
경제적 도움	3.7	(241)	7.0	(632)
가사지원 및 교통편의 제공 ¹⁾	14.2	(176)	7.7	(404)
정서적 도움	5.0	(261)	5.1	(450)
간병·수발 및 기타	5.5	(397)	7.4	(230)

주: 1) 가사지원은 집안청소, 세탁, 식사준비, 시장보기 등임.

2) 노인학대 발생원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호이해 부족으로 22.3%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행위자는 경제적 문제(44.9%), 상호 이해부족(17.4%), 성격차이(8.7%) 순으로, 여성행위자는 상호 이해부족(27.1%), 경제적 문제(25.7%), 사소한 말다툼, 잘못(10.0%) 등의 순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남성행위자 7.2%, 여성행위자 8.6%나 되었다.

3) 노인학대 행위자의 노인과의 관계

노인학대 경험노인들의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60.0%가 장남 또는 차남이하의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며느리(22.9%) 순이었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아들, 며느리, 딸·사위 등의 순으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들에 의한 비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반면, 며느리, 딸·사위,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는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 이유

(단위: %, 명)

구분	특별한 이유 없음	피해자의 잘못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행위자 자격지심	사소한 말다툼, 잘못	상호 이해 부족	기타	계(수)
전체	7.9	4.3	7.2	35.3	4.3	7.9	22.3	10.8	100.0(139)
남자	7.2	4.3	8.7	44.9	7.2	5.8	17.4	4.3	100.0(69)
여자	8.6	4.3	5.7	25.7	1.4	10.0	27.1	17.1	100.0(70)

연령별로는 65~69세 노인의 경우, 아들, 딸·사위, 며느리, 기타 가족원 순이었고, 이와는 달리 70~74세 노인과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가족원의 순이었다.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식

노인학대에 대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15.0%,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하였으며, 상당수의 노인(59.3%)들이 대응하지 않았으며, 끝날 때까지 참거나(15.0%) 무조건 피하는 것

(7.9%)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노인 모두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남성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외 무조건 피하는 경우도 남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끝날 때까지 참는 경우는 남성노인보다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끝까지 참는 이유로는 자녀(가족)이기 때문이 가 주요 이유이었으며,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27.3%)을 나타내어 피해노인들이 학대자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1. 학대경험 노인의 특성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 명)

특성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가족원 ¹⁾	계(수)
전체		47.9	24.3	20.7	7.1	100.0(140)
성	남성	60.0	22.9	14.3	2.9	100.0(35)
	여성	43.8	24.8	22.9	8.6	100.0(105)
연령	65~69세	48.7	15.4	30.8	5.1	100.0(39)
	70~74세	56.5	17.4	15.2	10.9	100.0(46)
	75세 이상	40.0	36.4	18.2	5.5	100.0(55)

주: 1)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 임.

표 12.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

(단위: %, 명)

구분	함께 폭력행사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끝날 때까지 참음	대응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15.0	7.9	2.1	15.0	59.3	0.7	100.0(140)
남성	14.3	8.6	0.0	8.6	68.6	0.0	100.0(35)
여성	15.2	7.6	2.9	17.1	56.2	1.0	100.0(105)

5) 서비스 요구

(1)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에 33.5%의 노인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시설 입소는 42.6%의 노인이 입소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과 보호시설 입소의향 모두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2)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 및 예방정책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피해

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해 보호시설 확충(51.4%)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신체적·정신적 치료 순으로, 여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신체적·정신적 치료,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순으로 지적하였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33.3%), 가정폭력 예방교육(28.8%),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17.5%), 상담서비스 제공(11.5%) 등의 순이었다. 노인의 성별로도 동일한 순으로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적하였으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만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표 13.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단위: %, 명)

구분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보호시설 입소의향			계(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잘 모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잘 모름	
전체	33.5	52.0	14.5	42.6	40.4	16.9	100.0(2,304)
남성	41.5	50.4	8.1	45.0	41.8	13.2	100.0(893)
여성	28.3	53.0	18.6	41.1	39.6	19.3	100.0(1,411)

표 14.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단위: %, 명)

구분	보호시설 확충	학대행위자의 법적 조치	상담 서비스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체적·정신적 치료	기타	계(수)
전체	51.4	18.5	7.9	4.8	16.4	1.0	100.0(2,230)
남성	52.3	20.2	8.8	5.0	12.8	0.9	100.0(876)
여성	50.8	17.4	7.4	4.6	18.8	1.0	100.0(1,354)

표 1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상담 서비스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기타	계(수)
전체	28.8	33.3	11.5	8.1	17.5	0.8	100.0(2,201)
남성	30.6	35.2	12.0	8.9	12.6	0.7	100.0(873)
여성	27.6	32.0	11.1	7.6	20.7	0.9	100.0(1,328)

(3)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시설 마련(32.9%),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23.0%),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21.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과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이 보다 높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후관리 서비스제공과 주거시설 마련 등이 높았다.

3. 정책방안

본고는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08)의 전체 가구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2,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학대 실태 조사결과와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동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이들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으로서 부양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표 16.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3.0	22.7	23.2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21.7	23.2	20.8
주거시설 마련	32.9	28.7	35.7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11.1	13.0	9.8
교육서비스 제공	2.0	2.2	1.9
자조모임 지원	1.4	1.4	1.4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1.7	2.1	1.4
법적 절차 지원	1.3	1.6	1.1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	1.9	1.9	1.9
가정폭력법에 장애인 조항 강화	0.8	0.7	0.8
장애인 전문 상담소 및 쉼터 확충	1.2	1.5	1.1
기타	1.0	1.0	0.9
계(수)	100.0(2,189)	100.0(863)	100.0(1,326)

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의 강화 및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동 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노인부양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중 경제적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등이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득보장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노부모 부양은 자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효 중시 문화와 가족주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노인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노인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이나 부양자의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결과 은폐되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노인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보호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가지원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보호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간의 유대감은 노인학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가족원간의 유대감이 노인학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유대감이 낮을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대감이 높을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을 통해 가족관계유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5)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인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대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양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고,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며, 끝까지 참거나 무조건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외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를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 등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과 스스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6)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서비스 개발 및 고소·고발체계 확립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 단계에서는 학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원조도 함께 제공되어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즉, 법에 의해 학대나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과 가해자가 변화를 통하여 다시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서비스 개발과 함께 재활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¹⁰⁾.

노인복지법 제39조 6 제1항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그리고 제2항에서는 '기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라는 조항을 부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편람」에는 아동학대 경우와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¹¹⁾.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처벌규정 등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7)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그동안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으나 경도효친사상 등 효를 중시하는 전통윤리사상과 관습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가 낮고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저조한 편이며, 노인학대의 신고율 또한 저조한 편이다¹²⁾. 따라서 노인학대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신고의식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 등을 통한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4. 결론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의 문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학대의 위협에 노출될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³⁾.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가족 내 사적인 영역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은폐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가족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갈등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배경은 노인학대가 보다 장기화, 잠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 노인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붙임**

10) 김수정·최윤진(2006). 노인학대문제와 개입체계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3호.
 11) 한해경(2006).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적합성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노년학, 제26권 제4호.
 12)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의 조사결과, 노인학대에 대해 경찰신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함.
 13) 정경희 외(2007).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및 사정도구 개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